

우루과이라운드와 知的所有權

이상정
법학과

〈요 약〉

知的所有權이라 함은 文學·藝術 및 科學的 著作物, 實演家의 實演, 音盤 및 放送, 人間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發明, 科學的 發見, 意匠, 商標, 서비스標, 商號 및 기타의 名稱, 不正競爭으로 부터의 保護 等에 관련된 權利와 그밖에 產業, 科學, 文學 또는 藝術分野의 知的活動에서 발생하는 모든 權利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知的所有權이 왜 자유무역질서를 나리는 가트에서 논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가트 協商의 타결후에 세워질 새로운 秩序下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연구이다.

本研究는 서언(제1절), 知的所有權의 内容(제2절), 知的所有權保護의 必要性(제3절), 國際的 保護의 必要性과 知的所有權의 國際的 保護를 위한 종래의 룰(제4절), 가트에서 知的所有權 問題가 논의되게 된 배경(제5절), 가트내에서의 각국의 주장을 예상되는 최종타결내용(제6절), 우루과이라운드의 지적소유권 협상(Negotiating Group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이하 TRIPs라고 한다)의 妥結豫想 内容과 우리 현행법을 비교하여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제7절), 結論(제8절)으로 구성되어 있다.

TRIPs 협상이 타결되면 저작권분야에서 데이터베이스보호나 貸與權 認定 問題, 상표분야에서 色彩商標 問題, 地理的表示分野에서 酒類에 관한 특별보호 問題, 意匠分野에서 織物意匠 問題, 特許分野에서 有性繁殖織物 保護나 保護期間의 調整 問題, 非公開情報 分野에서는 정부 제출입상자료에 대한 制度的 整備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1986년 이후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知的所有權保護를 강화하여 왔고, 현재 그 보호 수준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거의 선진국에 육박하고 있으므로 TRIPs협상이 타결되더라도 知的所有權 分野에 대한 규범적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TRIPs의 타결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은 상당하리라고 보여지나 그사이의 적응력 훈련을 통하여 상당한 준비가 갖추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UR협상은 완전히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UR이 타결되든 공중분해되든 이와 무관하게 知的所有權의 保護強化 傾向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社會가 產業社會에서 知價社會로, 物質優位에서 情報優位로 변화하게 되면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制度는 강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TRIPs협상은 이러한 경향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아직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한 우리로서는 知的所有權保護의 強化傾向에 대해서는 방어적·수동적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나 오늘날 사회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수동적 태도

만으로 일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회가 産業社會에서 知債社會로 변화하면 종래보다 많은 종류의 정보에 대해서 보호를 피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보호수준도 강화되지 않을 수 없다. 사태가 그러하다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知的所有權의 보호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URGUAY ROUND AND INTELLECTUAL PROPERTY

Lee, Sang-Jeong
Dept. of Law

〈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on TRIPs :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hereinafter "IP") shall include the rights relating to : literary, artistic and scientific works, performances of performing artists, phonograms and broadcasts, inventions in all fields of human endeavor, scientific discoveries, industrial designs, trademarks, service marks and commercial names and designations, protection against unfair competition, and all other rights resulting from intellectual activity in the industrial,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fields.

The main arguments of this paper are :

- ① why does GATT deal with such a IP(The Reasons of Addressing IP Issues in the GATT Negotiations)
- ② If new rule for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IP is established, how should we behave under such a new rule.

This paper arrives at the conclusion that :

we live in the information society. To regard IP highly is natural trend in the information society. To establish new rule in GATT is maybe one aspect of this trend.

So this paper propose we should take active and positive attitude on establishing new rule for protecting IP.

1. 序 言

知的所有權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知的創作物에 관한 權利와 營業上의 信用을 保護하고, 産業秩序를 維持하기 위한 標識에 관한 權利를 總稱하는 말이다. 원래 知的所有權이란 用

語 자체는 19세기 초, 舊秩序(양시안 래짐) 하에서의 모든 特權을 타파하려는 당시의 特權嫌惡의 雾圍氣에서, 일정한 분야에서의 特권은 產業發展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생각한 입법자들이 1791년 프랑스 국민의회에서 特許法制定의 趋旨를 설명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 政治的機智의 產物로 알려져 있다¹⁾. 그들은 發明 等 새로운 창작물에 대한 일정기간의 독점부여는 特권의 부여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그것은 창작자의 소유물이며, 이에 관한 소유권은 神聖하므로 이를 保護하여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당시의 所有權保護의 雾圍氣에 편승하였고, 이로써 일정범위의 독점이 그후에도 계속하여 인정되게 된 것이다²⁾.

이러한 서양적 분위기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창작물은 萬人 共有이며, 특정 개인의 소유물이라는 사상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1908년 대한제국 特許令이 시행된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크게 변하였다는 정후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1980년대 중반 미국의 對韓通商壓力의 일환으로 미국의 知的所有權의 保護를 강요하고, 특히 가트(GATT)의 우루파이라운드에서 서비스등과 더불어 新分野로서 교섭이 시작된 이래 크게 바뀌었으며, 이제는 우리의 주된 關心事項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知的所有權의 內容이라든가, 그것이 왜 자유무역질서를 다루는 가트에서 논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가트 協商의 타결후에 세워질 새로운 秩序下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本研究는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먼저 知的所有權의 內容(제2절), 知的所有權保護의 必要性(제3절) 및 國際的 保護의 必要性을 살펴본 후, 知的所有權의 國際的 保護를 위한 종래의 룰(제4절)과 가트에서 知的所有權問題가 논의되게 된 배경(제5절) 및 가트내에서의 각국의 주장과 예상되는 최종타결 내용(제6절)을 살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우루파이라운드의 지적소유권 협상(Negotiating Group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이하 TRIPs라고 한다)의 安結豫想 內容과 우리 현행법을 비교하여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언급(제7절) 한후, 結論으로서 新秩序下에서의 우리의 자세(제8절)에 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2. 知的所有權의 內容

2.1 概念과 特徵

知的所有權이란 上述한 바와 같이 인간의 知的創作物에 관한 權利와 標識에 관한 權利를 總

* 본 연구는 1990년도 사회과학연구소의 연구소과제연구비에 의한 것입니다. 연구비를 지원해 주신 학교 당국과 사회과학연구소에 대하여 깊히 감사드립니다.

1) 濱谷達己, 特許と經濟社會, 日本經濟新聞社, 1979, 22쪽.

2) 그들은 발명자의 권리는 「절대 불가침, 가장 신성, 가장 정통, 가장 개인적인 소유권」이라고 설명하였다. 1791년의 프랑스 특허법 제1조는 「모든 산업분야에 있어서 모든 발견 또는 신규의 발명은 그 창작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소유권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으나 물론 유체물에 관한 소유권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독일의 뮐러 등에 의하여 무체재산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종래 무체재산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미국의 對韓通商압력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신문지상에 지적소유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래 이제는 우리에게 상당히 친숙한 용어로 되었다. 최근에 와서도 일본의 상당수의 학자가 지적소유권이라는 용어가 부정확하다고 하여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며, 우리나라 특허청도 지적소유권이라는 용어가 부정확하다 하여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역시 정확한 용어는 아니라 할것이다.

稱하는 말이다.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設立條約 제2조 8항은 “知的所有權이라 함은 文學 藝術 및 科學的 著作物, 實演家의 實演, 音盤 및 放送, 人間 努力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發明, 科學的 發見, 意匠, 商標, 서비스標, 商號 및 기타의 名稱, 不正競爭으로 부터의 保護 等에 관련된 權利와 그밖에 產業, 科學, 文學 또는 藝術分野의 知的活動에서 발생하는 모든 權利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즉 著作權, 著作隣接權, 特許權, 科學的 所有權, 意匠權, 商標權, 商號權이나 서비스표권, 不正競爭防止法에 의하여 保護되는 原產地表示나 營業秘密 등 일체의 것, 소위 종래 工業所有權과 著作權이 모두 知的所有權에 포함된다³⁾. 이렇듯 知的所有權은 현재도 대단히 광범위한 權利를 포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과거에는 知的所有權으로 保護 받지 못하면 것도 知的所有權으로 保護되거나 과학의 발달로 새로이 保護의 필요가 있는 것이 발생할 것이다. 營業秘密(trade secrets)이 前者의例라면, 반도체칩의 회로배치권은 後者의例이다. 또 知的所有權 속에 포함된 하나 하나의 權利의 내용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넓어 지리라고 본다. 예컨대 著作權(copyright)은 말 그대로 카피할 權利(right to copy), 즉 複製權을 의미했으나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영화화권, 방송권등이 이에 포함되었으며, 새로운 이용방법의 발달과 더불어 貸與權이 著作權의 내용으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知的所有權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擴張一路에 있는 權利이다. 이하 우리나라에서 현재 인정되고 있는 知的所有權에 대해서 현행법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 우리 現行法上의 主要한 知的所有權

(1) 特許權

特許權이란 기술적 창작물인 發明을 일정기간 동안(우리나라에서는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출원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特許權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5년)⁴⁾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權利이다. 여기서 실시라 함은 (가) 물건의 發明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행위이며, (나) 방법의 發明인 경우에는 그 發明을 사용하는 것이며,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發明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이용하여 물건을 생산하거나, 혹은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特許權은 단순히 發明을 했다는 사실로 부터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發明者가 자기의 發明內容을 特許法上의 일정한 기재방식에 따라 작성한 特許明細書 및 圖面을 特許廳에 출원하고 特許廳이 이를 심사한 결과 特許를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는 때에 비로소 부여되는 것이다. 따라서 特許는 發明者的 特許出願에 대한 特許廳의 特許附與라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부여되며, 이에 의하여 發明者는 特許權이라는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는 獨占 排他的 權利를 취득한다.

하나의 發明에 대해서는 하나의 特許權 만이 인정된다. 이를 1發明 1特許의 원칙이라고 한

3) TRIPs 안에 의하면 [본 협정의 목적상 知的所有權이란 용어는 2장의 제1절에서 제7절까지의 적용대상인 모든 범주의 지적소유권을 말한다]고 한 후 제2장 제1절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2절은 상표, 제3절은 지리적표지, 제4절은 의장, 제5절은 특허, 제6절은 반도체 칩의 배치설계, 제7절은 未公開된 情報의 保護로 구성되어 있다.

4) 특허법 제88조.

다. 만약 동일한 發明을 2인 이상이 하여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중 먼저 特許廳에 特許出願한 자에게 特許가 부여되며(先出願主義)⁵⁾, 같은날에 2이상의 特許出願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출원자의 협의에 의하여 그중 하나의 特許出願人 만이 特許를 받을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모두 特許를 하지 아니한다(법 36조 2항 단서).

(2) 實用新案權

實用新案權이란 物品의 形狀, 構造, 組合에 관한 實用的인 考案을 일정기간 동안(우리나라에서는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로 부터, 출원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 부터 10년)⁶⁾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權利이다. 여기서 實施라 함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행위이다.

發明과 考案은 모두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나, 通常前者는 기술적 진보가 큰 경우, 後者는 그만 못한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이다. 그리하여 特許制度는 大發明을 保護하는 制度이며, 實用新案은 小發明을 保護하기 위한 制度라고 일컬어 진다. 또 發明의 경우에는 物 그자체나 方法에 대해서도 인정되나, 考案은 항상 물품에 구현된 기술이론을 保護對象으로 한다.

實用新案權은 特許權과 유사한 절차를 통하여 취득되나, 權利附與要件이 特許權 만큼 엄격하지 아니하여⁷⁾ 등록이 손쉽고 무효로 될 확률이 적어 特許權보다 安定的 權利라고 말할 수 있다.

(3) 意匠權

意匠權은 물건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하여 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 즉 意匠에 대해서 주어지는 權利이며, 意匠權者는 登錄意匠이나 類似意匠을 일정기간동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 부터 8년)⁸⁾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여기서 實施라 함은 實用新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意匠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意匠權은 심미적 창작에 부여되는 權利로서 기술적 창작에 부여되는 特許權이나 實用新案權과 다르다. 즉 前者는 美的 課題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데 대하여 後者는 技術的 課題의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意匠權도 전술한 特許權이나 實用新案權과 마찬가지로 特許廳에 意匠登錄出願을 한 후, 심사를 거쳐 特許廳에 등록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著作權法은 應用美術著作物을 다른 저작물과 동일하게 保護하고 있어 이부분에 관한 著作權法과 意匠法의 調整이 앞으로의 과제

5) 이점에서 先發明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이나 필리핀(현재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곳은 이 두 곳 뿐이다)과 다르다. 先出願主義가 세계적인 추세이며, 미국도 조만간 先出願主義로 변경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경제신문 1992. 10. 15.).

6) 실용신안법 제22조.

7) 특허법 제2조 1호는 發明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나, 考案의 경우에는 이러한 고도성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실용신안법 제2조 1호 참조). 그리하여 그 考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通常의 知識을 가진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實用新案權이 부여된다(실용신안법 제4조 2항 참조).

8) 의장법 제40조, 1993년 12월 10일 개정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로 남아 있다.

(4) 营業秘密⁹⁾

營業秘密이라고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獨립된 經濟的 價值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秘密로 維持된 生產方法, 販賣方法 기타 영업활동에 有用한 技術上 또는 營業上의 情報를 말한다 (不正競爭防止法 제2조 2항). 예컨대, 秘密로 간직된 고객명부, 설계도면 등 技術資料 等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12월의 不正競爭防止法의 改正에 의해 营業秘密의 法的인 保護의 틀을 마련하였다. 물론 그사이 우리나라에서 营業秘密에 관한 保護가 法의으로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营業秘密侵害의 態樣에 따라서는 不法行爲로도 될 수 있으며, 刑法上의 犯罪行爲로도 될 수 있어 民·刑法上의 保護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뿐만아니라 契約에 의한 营業秘密의 保護도 유력한 方法이었다. 그러나 종래의 전통적인 营業秘密의 保護方法의 하나인 民事的 救濟手段은 营業秘密의 保護에 충분한 保護method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禁止請求를 할 수 없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한편 現行 刑事法도 营業秘密의 漏泄等 侵害行爲 그자체를 犯罪行爲로 보아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营業秘密을 侵害하는 過程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어떤 行爲가 刑事法規上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그 구체적인 行爲를 처벌함으로써 간접적으로 保護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이렇게 不實한 保護method도 营業秘密의 重要性이 강조되기 전에는 그대로 용인될 수 있었다. 심지어 营業秘密의 강력한 保護는 技術公開를 유도하는 特許政策과 배치된다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技術革新의 현저한 진전, 경제 사회의 情報化등과 더불어 营業秘密의 重要性이 현저하게 증대되고, 특히 從業員의 職場移動이 현저하게 증가하자 营業秘密 그자체를 保護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 营業秘密의 保護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財產의 保護라고 하는 個人的 利益擁護에 그치는 것은 아니며, 넓은 의미에서는 競爭秩序의 維持라고 하는 公益的 側面도 가지고 있다.

우리법상 营業秘密로 保護받기 위해서는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2) 獨립된 經濟的 價值를 가질 것. (3) 秘密로서 管理되고 있을 것. (4) 生產方法, 販賣方法 기타 营業上 有用한 技術上 또는 經營上의 情報일 것의 4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营業秘密은 秘密性을 간직하고 있는 한 기간에 제한없이 保護된다.

(5) 商標權

商標란 상품을 업으로써 생산, 제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이며, 商標權은 이러한 商標를 特許廳에 등록한 자가 자기가 등록한 그 登錄商標를 指定商品에 일정기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¹⁰⁾ 동안 獨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權利이다.

그러므로 商標權도 다른 產業財產權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特許廳에 등록출원을 한 후, 그 商標가 登錄適格이 있는지 與否에 관한 심사를 거쳐 特許廳에 등록이 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商標에 관한 權利는 등록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그것이 거래계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거

9)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것은 拙稿, 营業秘密의 保護, 人權과 正義 제191호, 大韓辯護士協會, 1992.

7 참조.

10) 상표법 제42조.

기에 商標使用者의 영업상의 신용이 결합됨으로써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됨으로 그에 대한 法의 保護는 사용주의 나라에서 보듯이 훨씬 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고, 이점에서는 나라의 경제정책·기술정책과 밀접불가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特許權, 意匠權 등과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商標에 있어서 登錄制度는 商標를 둘러싼 權利關係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하나의 법기술에 지나지 아니함에 반하여 特許 等에 있어서 登錄制度는 그나라의 產業經濟政策의 反映이라고 할 수 있다.

또 商標權은 特許權이나 意匠權 등과는 달리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更新을 통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權利者가 하려고만 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것은 商標制度가 商標에 화체된 商標使用者의 營業上의 信用을 유지시키고 수요자로 하여금 商標를 통한 상품을 식별시킴으로써 상품에 대한 오인과 혼동을 막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商標의 영속적인 독점사용을 허용한다고 해서 타인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國家產業發展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일단 10년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更新制度를 둘 것은 10년이란 기간의 경과로 등록요건의 판단기준도 달라질 것이므로 한번 심사를 거칠 필요도 있고, 또 商標權者도 사정이 달라져서 登錄商標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登錄商標를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6) 著作權

著作者가 그 자신이 창조한 저작물, 예컨대 시나 소설 등에 관하여 갖는 排他的 權利를 著作權이라 한다. 이러한 著作權에는 著作財產權과 著作人格權의 양자가 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이익을 保護하고자 하는 權利로서 주로 저작물을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이다. 이에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등이 포함된다.

한편 정신적 창작물로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을 반영하며, 인격 밖에 존재하는 재산적이익보다 한층 존귀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非金錢的인 제2의 權利를 저작인격권이라 한다. 이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포함된다.

(7) 半導體集積回路의 配置設計權

半導體集積回路 또는 半導體칩이란 한 변이 수 mm에 불과한 半導體 基板위에 트랜지스터, 콘덴서, 저항 등의 回路素子들을 導線으로 연결하여 集積시킨 電子回路이다. 이러한 半導體集積回로는 겨우 30여년 전에 출현한 이후 눈부신 技術革新에 의해 集積度, 기술의 향상과 함께 값이 싸지게 됨에 따라 현재는 컴퓨터, OA機器, 家電製品, 自動車 등 產業經濟 내지 國民生活의 모든 면에서 利用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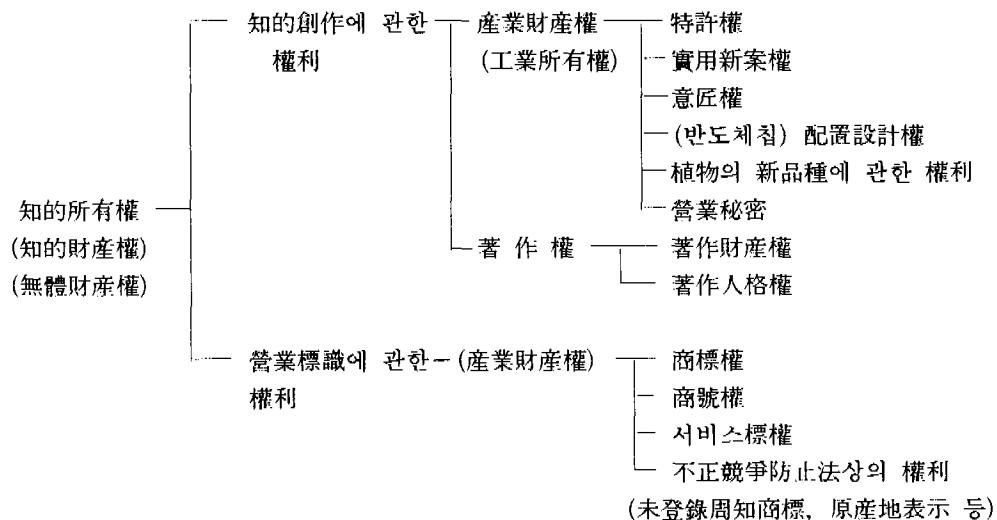
이러한 集積回路의 발전에는 많은 費用을 필요로 하며, 특히 回路配置의 設計에는 막대한 費用이 들어간다. 그러나 既存의 法制 아래에서는 半導體集積回路의 回路配置는 만족스러운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先進國에서는 새로운 特別法을 만들어 이를 보호하고 있다. 즉 1984년의 美國의 半導體칩 法과, 1985년의 日本의 半導體集積回路의 回路配置에 관한 法律, EC가 1986년 발표한 指針(Directive)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에는 1986년 7월 韓·美間의 合意覺書에서 半導體칩 保護制度의 도입에 관한 研究를 하기로 한 이래, 美國이 早期立法화와 保護水準의 提高를 집요하게 要請하였는 바, 1992년 11월 國會를 통과하여立法化되었다. 반도체칩법의 특징은 특히법적 보호방법도 아니며, 저작권법적 방법도 아닌 제3의 보호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配置設計權은 登錄을 하여야만 權利가 발생한다.
- ② 半導體 칩法은 基本的으로 創作性만을 요구하고, 特許法과 같은 新規性이나 進歩性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③ 동일 유사한 配置設計과 하더라도 모방한 것이 아니면 權利의 併存을 인정한다.
- ④ 保護期間이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다.
- ⑤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정면으로 인정한다. 즉 교육, 연구, 분석 또는 평가 등의 목적이나 개인이 비영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배치설계의 복제 또는 복제의 대행 및 연구, 분석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의해 제작한 창작성있는 배치설계에 대해서는 원래의 배치설계권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이는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는 기존의 배치설계를 연구, 분석 또는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기술향상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 한 것이다.

2.3 小 結

以上 간단히 知的所有權의 意義와 우리법상 主要한 知的所有權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3. 知的所有權保護의 必要性

3.1 序言

知的所有權의 保護는 법이 知的所有權者에게 排他的權利를 인정하여 타인의 모방이나 모용으로부터 保護하는 방법을 택한다. 이렇듯 법이 知的所有權者만이 자기의 지적창작물이나 영업상의 표지를 이용(사용)토록하고, 제3자가 이를 이용하려면 知的所有權者的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허락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물론 일차

적으로는 타인의 創作의 保護 또는 信用의 保護에 있다. 그러나 특정인의 창작이나 신용의 保護를 위해서 제3자의 모방의 자유 혹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인가. 模倣 그 자체가 절대 악이라면 수긍이 되나 타인의 좋은 점을 따르고, 본받는 것 즉 모방이야 말로 교육의 첫걸음이며, 인류 문화발전의 원동력 아니었던가. 따라서 단순히 創作의 保護 혹은 信用의 保護라는 것 이상의 별도의 보다 적극적인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知的所有權을 지적창작에 관한 權利와 영업표지의 保護에 관한 權利로 나누었으므로 필요성도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3.2 知的創作에 관한 權利

새로운 發明, 考案, 意匠이나 저작물등은 그것을 최초로 창작하는 데는 대단히 힘이드나 그것을 모방하는 것은 극히 쉽다. 따라서 모방을 무제한하게 인정하게 되면 최초의 개발자나 창작자의 땀과 노력은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 옛날 같이 發明도 우연의 산물이거나 취미로서 행하여 지고 예술도 귀족의 일종의 취미이며, 예술가들도 귀족이나 후원자의 재정적비호를 받는 경우라면 설사 모방이 행하여 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發明이나 考案이 주로 기업에서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고 예술가등도 자기의 창작물을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으로 되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 최초 개발자로서의 利點이 전혀 없는 상태, 개발 리스크는 최초의 개발자가 부담하고, 후발주자는 이를 모방하여 영리를 취하는 상태, 최초의 개발자가 제작한 상품에는 개발비가 원가에 포함되어 있어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후발주자의 상품과는 경쟁이되지 아니하는 상태, 아마도 이러한 상태로 되면 어느 누구도 개발자로의 위험을 부담하려고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한 곳에서는 停滯와 後退는 있을지언정 발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새로운 것을 우연히 알아낸 사람조차도 타인에게 모방당하지 않기 위해서 숨기게 되고, 다행히 이것을 그 자손이나 수제자에게 알려주고 죽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모처럼 알아낸 知識은 死藏된다. 그러므로 일정한 기간의 독점적 이익의 보장이라는 대가를 지급하고 公開를 鼓勵하는 特許制度 등 知的所有權制度야 말로 인류가가 發明한 최대의 發明品이다. 1623년 영국의 전매조례가 모든 독점을 금지하면서도 새로운 發明에 대해서 14년 또는 그 이하의 기간의 독점을 인정한 것이나 모든 특권의 일소라는 近代革命의 와중에서도 소유권 속으로 도피시켜 그 존속을 유포토록 한 입법자의 지혜는 높이 評價되어야 한다.

3.3 營業標識에 관한 權利

法이 營業標識에 대하여 독점적 사용을 허용하고 제3자의 모방을 금지하는 취지는 지적창작물에 관한 權利保護의趣旨와는 조금 다르다. 법이 영업표지에 관한 權利를 保護하는 것은 영업표지에 화체된 표지권자의 신용을 保護함과 아울러 이러한 표지에 의지하여 상품등을 선택하는 일반 소비자의 신뢰를 保護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한 말이지만 자급자족경제나 물불교환경에 있어서는 특히 이러한 표지를 保護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대량생산·대량판매의 시대로 되면 상품은 개성을 잃고 자타상품의 식별이 곤란하게 된다. 이러한 곳에서는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손쉽게 구입하는 수단을 찾게되고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그 자신의 상품임을 소비자에게 인식시켜 계속 반복하여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자기의 위치를 유지 또는 향상시키려고 한다. 따라서 自他商品을 區別하기 위한 마크,

자타영업을 구별하기 위한 마크, 原產地를 식별하기 위한 마크등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각 기업이 장기간 그 마크를 사용함으로써 기업은 기업대로 그 마크를 통해 신용을 축적하고, 소비자는 그마크 만을 보고 상품을 구입한다. 이러한 경제 메카니즘 하에서 타인이 영업표지를 모방하게 되면 營業者가 장기간에 걸쳐 쌓아 올린 신용이 훼손될 뿐아니라 消費者도 그가 의도하지 아니한 물건을 사게됨으로써 피해를 입게된다. 결국 영업표지의 독점적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영업자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되며, 이를 통해 產業秩序가維持된다.

4. 知的所有權의 國際的 保護의 必要性과 知的所有權의 國際的 保護에 관한 從來의 룰(RULE)

4. 1 知的所有權의 國際的 保護의 必要性

知的所有權의 對象이 되는 發明이나 意匠은 유형물이 아닌 무체물이므로 장소를 달리하여 이용이 가능하고 또한 전파성이 강하다. 특히 교통 통신의 발달로 產業情報가 신속하게 교환되면 외국에서도 그 모방이나 보급이 손쉽게 이루어 진다. 물건, 사람, 돈에 대해서는 국경이 있고 자유로운 유통이 곤란하나 知的所有權의 대상이 되는 무체물에는 그러한 어려움이 없다. A국에 있으면서 B국의 기술을 모방한다든지 C국의 마크를 도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다. 실제로 知的所有權制度 및 그 운용이 부적절한 개발도상국에서는 外國 製品의 모조품을 제조하기가 쉽기 때문에 많은 값싼 모조품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이때문에 진정한 権利者의 제품이 잘 팔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그레셤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國內는 물론 國際的으로도 知的所有權이 保護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2 知的所有權의 國際的 保護에 관한 從來의 룰(RULE)

知的所有權의 保護對象이 되는 發明이나 意匠등이 國際的 保護를 필요로 한다고 해도 特許權등을 부여하는 것은 主權의一部이며, 世界聯邦과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현실에 있어서는 각국별로 保護를 받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각국별 知的所有權制度를 전제로 한 위에서 어느정도 조화를 피하여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 즉 외국에서의 権利取得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이것은 이미 100여년 전부터 실시되고 있다.

1) 產業財產權 保護에 관한 파리 條約

產業財產權이란 特許發明이나 實用적인 考案, 簡便적인 意匠과 같은 產業上 유용한 신규의 창작에 관한 権利와 商標나 서비스표등 영업상 유용한 표지에 관한 権利를 총칭하는 개념이며, 知的所有權의 일부임은 이미 본바와 같다. 파리 條約은 이러한 產業財產權을 國際的으로 保護하기 위하여 1883년 성립한 조약이며, 각국의 工業所有權이 獨자적이라는 屬地性을 선언한 후에 內·外國人平等의 原則과 優先權制度¹¹⁾를 규정하여 외국에서 產業財產權을 보다 용이

11) 우선권제도란 어떤 동맹국에서最先으로 정규의 출원을 한자 또는 그의 승계인이 일정기간내(특허나 실용신안은 1년, 의장·상표는 6월)에 다른 동맹국에 동일목적물에 대하여 출원하는 경우 출원의 순

하게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이 조약은 內·外國人平等의 原則과 優先權制度에 의하여 외국에서 産業財產權을 취득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나 개별국가에서 保護를 받으려면 당해국가에 개별적으로 등록을 하여 權利를 취득하여야 한다. 또 이 조약은 각 국의 産業財產權法이 相異함에 따라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따라서 특정국가에서 그 나라의 입법정책상 의약품이나 물질 그 자체에 대해서 特許를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혀 조약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상으로 부터 2개의 문제점을 쉽게 찾아 낼 수 있다. 즉

- ① 어떻게 하면 단 한번의 출원으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국가에서 保護를 받을 수 있는가.
- ② 각국의 保護內容이 서로 다른 것을 가급적 調和시킬 수는 없는 것인가.

2) 文學的 및 藝術的 著作物의 保護에 관한 베른 條約

1886년에 성립된 베른조약은 이 조약에 가입한 동맹국 사이에서는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自國民과 동일하게 保護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著作物의 발생에는 창작만으로 족하고 어떠한 방식도 필요없도록 한 國內法의 國際的 投影이지만 어쨌든 이점에서는 産業財產權 保護에 관한 파리條約과 다르다. 따라서 著作物에 있어서는 産業財產權에 비해 보다 용이하게 國際的 保護를 받을 수 있다. 즉 이 조약하에서 保護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출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파리조약하에서와 같은 불편은 없다. 그러나 이 조약도 각국 著作物法의 통일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加入國이라 하더라도 일곱 차례의 개정과정에서 비준한 조약이 서로 달라 保護의 程度가 相異할 수 있다.

3) 世界著作權條約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世界著作權條約은 내국민대우는 규정하고 있으나 最小限의 保護에 그치고 있으며, 方式主義 國家에서 著作物保護를 받으려면 ⑤ 표시가 필요하다는 등 베른조약과는 달리 규정하고 있다. 또 上記의 파리조약과 베른조약은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에서 관장하나 世界著作權條約은 유네스코(UNESCO)에서 관장한다.

4) 로마 條約(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

로마 條約은 實演家·레코드 製作者 및 放送事業者의 3者를 국제적으로 保護하고자 하는 국제조약이다. 일반적으로 隣接權條約이라고 한다. 隣接權條約은 ① 內國民待遇의 原則 ② 最低限의 保護 ③ 音盤의 2次 使用¹²⁾에 대해서 규정하며, 隣接權의 保護期間은 最低 20년이다(同條約 14조).

위 및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동맹국중 맨처음 출원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파리조약 4조 참조)으로 파리조약을 체결하도록 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12) 2次 使用이란 商業레코드를 放送이나 公衆傳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나 이것을 條約上 여하히 規定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外交會議의 최대의 초점이었다.

5. 새로운 知的所有權 狀況과 從來의 률의 問題點

-GATT에서 논의하게 된 배경

5.1 序言

이상 본바와 같이 知的所有權의 國際化에 대해서는 이미 19세기 말부터 그 重要性이 인정되고는 있었으나 당시의 상황이 소위 내쇼날리즘의 摧頭期 이었고, 또 경제 자체의 國際化가 그다지 진전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知的所有權의 國際化도 어느정도 이상은 진전되지 아니하였다. 물론 그 후에도 베른 조약의 개정 과정이 말해 주듯이 知的所有權의 狀況變化에 따라 어느정도 國際 률이 변하여 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國際 률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준수할 당사국들의 합의를 필요로 하며, 특히 WIPO가 관掌하는 파리 조약이나 베른 조약을 변경하는 데는 전회원국의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知的所有權도 다른 상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출국과 수입국, 즉 기술 등을 수출하여 이득을 취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기술등을 수입할 수 밖에 없는 국가도 있어¹³⁾ 知的所有權의 國際的保護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合一一點을 도출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知的所有權과 관련된 무역량이 크지 않거나 혹은 기술 수출국과 수입국의 기술격차가 메울 수 없을 정도로 벌어져 모방 조차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로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싶이 오늘날의 무역은 종래와 같은 전통적인 產品과 더불어 高度技術製品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고도 기술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증가하면 증가했지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종래의 기술 후진국들도 교육투자나 경제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의 개발은 곤란하더라도 모방품의 제조는 크게 어렵지 않게 되고, 이러한 모방품이 값싼 임금과 결합하여 선진국 시장을 넘보게 되면 선진국의 무역수지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知的所有權의 國際的保護에 관한 새로운 國際 률을 형성하려는 선진국의 공세는 집요하게 된다. 오늘날 미국이 가트의 장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최근의 知的所有權의 國際的動向을 알기 위해서는 미국의 움직임, WIPO의 움직임, GATT의 움직임을 알아보기로 한다.

5.2 美國의 움직임

미국의 최근 움직임은 經濟의 國際化와 產業의 空洞化에 따른 국내외에서의 知的所有權保護의 강화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극히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근 國際的競爭力を 잃고 있다. 이러한 國際競爭力喪失의 원인의 하나로서 미국은 개발도상국의 知的所有權保護의 미흡을 지적하고 있다. 즉 知的所有權制度 및 그 운용이 부적절한 개발도상국에서는 부정상품의 제조 및 판매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상품의 출하로 美國製品이 팔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조품 때문에 제3국에의 수출도 어려우며 심지어는 미국시장에 이러한 제품이

13) 오래된 통계이기는 하지만 1974년 UNCTAD와 WIPO의 보고에 의하면 개발도상국에 부여되고 있는 특허의 수는 전세계 특허의 6%이며, 그 중 5/6는 외국인이 특허권자이므로 결국 개발도상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특허는 약 1%에 불과하며, 이것마저도 그 수준이 그리 높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침투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⁴⁾. 따라서 미국은 경제발전이 어느정도 이룩된 신흥공업국(소위 NICS)등은 國際貿易의 場에 있어서 비상호주의적 특혜조치로 부터 「출입」을 하고, 선진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뿐만아니라 기타의 도상국도 상호주의 입장에서 선진국과 동등한 知的所有權 保護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넓은 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 기업은 예전에는 國際的 마켓에 크게 주목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경제의 國際化가 進展되면 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國際的 마켓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國際的 마켓을 생각하게 되면 각국마다 서로 다른 知的所有權制度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制度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미국은 世界 各國이 어느정도 하모나이즈된 知的所有權制度를 갖는다는 것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제품을 수출하는 것 대신에 技術 等 知的所有權을 輸出함으로써 막대한 로이얄티(royalty)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

기술력이 낫더라도 용이하게 만들수 있는 부정상품, 예컨대 他人의 商標의 모방, 프로그램이나 비데오테이프등의 복제, 서적의 해적출판 등의 제작을 금지시키는 것 만으로도 미국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¹⁵⁾. 하물며 소위 하이테크에 대해서 까지 세계적으로 하모나이즈된 실효성있는 知的所有權制度가 성립되면 미국의 이익은 막대한 것으로 될 것이다.

이상 본바와 같이 미국은 현재 知的所有權強化가 國益에 부합한다고 보고 국내외적으로 강경하게 움직이고 있다. 다음은 1986년 4월 11일 USTR이 발표한 美國政府의 知的所有權 保護政策의 요약의 일부이다. 이것을 보면 미국의 입장은 한눈에 알 수 있다.

「知的所有權의 보다 강력한 保護를 달성하기 위하여 미국정부는 이하의 점을 목표로 한다.

- a. 國內 및 國際 레벨에서 保護 및 法執行의 強化
- b. 尖端技術에의 知的所有權의 擴大
- c. 國際的인 知的所有權 保護基準의 統一, 例外措置의 撤廢

1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크로포드위원의 견해에 의하면 미국은 이러한 지적소유권보호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매년 600억달러의 손해를 보고있다고 한다. (중앙경제신문 1993. 4. 27자 2면).

15) 1986년의 OTA報告書에 의하면 대표적 10개국에 의한 레코드/테이프, 영화, 서적, 소프트웨어의 海賊行為에 의해서만 13억2900만 달리이상의 損失을 입고 있다고 보았다.

(자료: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an Ag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6, p. 241)

(단위 100만 달리)

	레코드/테이프,	영화,	서적,	소프트웨어	계
싱가폴	220	11	107	20	358
대만	9	25	118	34	186
인도네시아	180	17	6	3	206
한국	40	16	70	20	146
필리핀	4	19	70	4	97
발레지아	33	13	20	7	73
타이	13	12	7	2	34
브라질	19	13	8	35	75
에집트	5	5	10	3	23
나이제리아	120	?	11	?	131
합계	643	131	427	128	1329

* ? 표시는 자료가 없어 산정할 수 없었던 경우.

- d. 貿易相對國에 대한 법의 제정 및 집행의 요청과 위반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요청
- e. 美國內에 있어서 保護의 強化」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는 1988년에 包括通商競爭力強化法을 제정했으나 그 이전에도 知的所有權關係法을 개정하거나 법해석을 통하여 知的所有權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전대 이미 1980년에 著作權法의 개정을 통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明示的 保護, 1984년의 반도체칩법의 제정, 식물신品种의 다양한 保護를 통해 바이오테크를로 지에 대응할 수 있는 制度의 確立, 독점금지법의 완만한 적용을 통한 特許權 等의 強化, 법원에 의한 特許權 無效比率의 현저한 減少 등이 그 예이다. 뿐만아니라 민간기업도 IBM, GM, GE, 듀퐁, 화이자, 몬산토, 휴렛·포커드, 메르크, 브리스톨 마이어스, 존슨 앤 존슨, 록크웰 인터내셔널 등 11개회사가 주축이 되어 IPC (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를 결성, 知的所有權의 國際的 保護를 위한 강력한 운동을 벌리고 있다.

한편 미국의 國際的 戰略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가트(GATT)를 통해 知的所有權의 國際的 保護를 도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2국간 교섭을 통해서 상대국에 知的所有權保護를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가트(GATT)에 대해서는 후술하므로 여기서는 2국간 교섭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미국이 2국간 교섭을 고집하는 것은 두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가트와 같은 多者間 協商에 있어서는 여러나라의 입장이 각각 다르므로 타결이 쉽지 않고, 타결된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는 사이에 미국의 이익은 침해된다. 또 하나는 2국간 協商에 있어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마음껏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知的所有權 協商에서 이미 경험한 바이다^[6].

5.3 WIPO의 움직임

知的所有權에 관한 國際的 同盟으로서는 WIPO(世界知的所有權機構)가 있다. 이것은 이미 언급한 產業財產權에 관한 파리 同盟과 著作權에 관한 베른 同盟의 合同事務局이며, 유엔의 한 전문기관이다^[17]. WIPO의 설립 목적은 국가간의 협조를 통하여 그리고 적당한 경우에는 기타 모든 國際機構와 공동으로 전세계를 통한 知的所有權의 保護를 촉진하고 諸同盟國間의 행정적 협조를 확보함에 있다. 그러므로 WIPO는 知的所有權 保護를 위한 國際的 률의 작성에 있어 중심적 위치에 있는 기관이다. 실제로 WIPO나 그前身인 BIRPI(知的所有權保護合同國際事務局)에 의해 파리 條約 등이 수차 개정되었다. 그러나 WIPO의 회원국에는 개발도상국이나 사회주의 국가도 있기 때문에 南北 사이에 혹은 東西 사이에 항상 대립이 있어 새로운 률의 형성은 어려운 형편이다. 최근 이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懸案은

- (1) 사회주의권의 制度인 發明者證에 대해서 特許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
- (2) 特許發明의 不實施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가할 것인가^[18]

16) 우리나라는 미국과 사이에 1986년 7월, 양국간의 협상타결 형식으로 미국측의 지적소유권보호요구를 수락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합의각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主權國家 끼리의 협상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는 야유에 가까운 논평이 있다 (中山信弘 外, 知的所有權, 日刊工業新聞社, 1987, 176면 참조). 이러한 야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후 EC에 대해서도 유사한 보호를 약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일본에 대해서도 EC수준의 보호를 해 줄것으로 알려졌다.

17) WIPO는 지적소유권 각 분야의 9개의 국제조약을 관掌한다.

(3) 물건의 제조방법에 관한 特許權의 效力を 어느 범위 까지 인정할 것인가

(4) 지리적 명칭을 商標로 등록할 수 있는가 혹은 商標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할 것인가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기존 조약의 개정이라는 WIPO를 통한 새로운 룰의 형성은 어려운 형편에 있으며, 이것이 미국이 知的所有權問題를 가트의 場으로 끌고간 주된 이유의 하나이다. 다만 WIPO도 가트에서 WIPO와 별도로 知的所有權問題가 논의되는 것에 자극을 받아 부정상품에 관한 모델조항을 검토한다든지 혹은 소프트웨어, 반도체칩, 바이오테크놀로지에 관한 新條約을 작성하려고 한다든지 하여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WIPO야 말로 知的所有權에 관한 전문가 집단이고,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知的所有權問題는 WIPO에서 다루어야 하며, GATT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도 강하다. 또 가트의 우루파이라운드 각료선언에 있어서도 「이들 교섭¹⁹⁾은 이들 사항을 취급하는 WIPO 및 기타 기관에서 행하여지는 보완적인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실제로 WIPO에서는 가트의 활동과는 별도로 1990년 12월 國際特許條約草案을 마련하여 1991년 6월에 외교회의에 상정함으로써 國際知的所有權分野에서 세계적인 조화와 통일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들 諸點에 비추어 앞으로 WIPO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다만前述한 바와 같이 南北問題, 東西問題가 극복하여야 할 과제임은 물론이다.

5.4 가트(GATT)의 움직임

가트(GATT ; The General Agreement of Tariff and Trade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란 1948년에 성립한 무역에 대한 룰을 규정한 무역에 관한 기본적인 協定이며, 관세의 경감, 무역장벽의 철폐, 무역상의 차별대우를 제거함으로써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이나 실질수입의 증대, 유효수효의 확보, 자원의 활용, 상품의 생산 및 유통의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트는 ① 무차별화 국제대우의 원칙 ② 자유무역의 원칙 ③ 상호주의 원칙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²⁰⁾

가트는 금융의 자유화를 도모하기 위한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 國際 통화기금)와 더불어 브레튼 우드(Bretton Woods) 체제 혹은 가트·아이·엠·에프體制라고 말해지는 전후 國際經濟體制의 2대 支柱의 하나이며, 國際經濟秩序에 있어서 커다란 힘을 발휘하고 있다. 성립당시에는 23개국이 가입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100개국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²¹⁾. 지금까지 가트는 관세의 인하와 수출입 수량제한의 감소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었다²²⁾. 그러나

18) 특히 특허권의 설정등록후 특허권이 성립한 당해 국가에서 권리자가 세조는 하지 아니하고 수입만하는 경우이다. 개발도상국은 수입만으로는 특허를 이용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강제실시권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허권에 제한을 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선진국은 이러한 제한은 오히려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유해한 규정으로 본다.

19) “이들 교섭”이란 「부정상품 무역을 포함한 지적소유권의 무역적 측면에 관한 교섭」을 가리킨다.

20) 이러한 GATT의 理念에 비추어 볼 때 가장 GATT의 理念에 위배된 나라는 미국이라는 견해는, 小島康裕, 企業社會と自由 - ガットとアメリカ的保護主義の激突, ジュリスト No. 978, pp. 67 참조.

21) 1993. 12현재 116개국. 그러나 비회원국인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도 가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22) 그사이의 多者間貿易協商(라운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1947); 가트발족시의 관세교섭, 45000품목, 23개국 참가.

2차(1949); 제2회 관세교섭, 5000품목, 32개국 참가.

3차(1950-1951); 제3회 관세교섭, 8700품목, 34개국 참가.

1973년에서 1979년 까지 개최된 제7차의 다자간 무역협정이었던 동경라운드에서는 지금까지의 수입제한 문제외에도 소위 부정상품(위조상품)의 교역방지를 강화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것은 위조상품의 교역의 확대에 따른 미국의 주장이었는데 미국은 가트 제9조(原產地表示)의 商標 및 著作權保護 규정에 의거 가트에서 위조상품교역을 방지할 수 있는 규칙 및 절차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知的所有權保護와 관련된 문제는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개발도상국의 반발에 부딪혀 동경라운드의 多者間貿易協商(MFN) 코드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1983년 제39차 가트총회에서 위조상품의 교역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여 가트에서 이 문제를 다룰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정짓기 위한 검토가 전문가 그룹에서 행하여졌다. 검토결과 商品偽造의 對象行爲로는 商標偽造, 意匠의 無斷複製, 特許 및 著作權侵害를 들었고, 이러한 위조상품을 해외시장으로 수출, 판매하는 문제는 가트의 취급대상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86년 우루과이의 푸타 델 에스테에서 개최된 가트 각료회의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교섭 개시선언이 1986년 9월 20일 채택되었고, 그 중에서 知的所有權, 서비스 무역, 貿易關聯投資措置라고 하는 신 분야에 대해서도 토의할 것을 선언하였다. 각료선언 중 知的所有權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不正商品貿易을 포함하는 知的所有權의 貿易關聯 側面」

國際貿易에 대한 왜곡 및 장애를 삐감하기 위하여, 그리고 知的所有權의 效果의이고 적절한 보호를 촉진할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또 知的所有權의 보호를 위한 措置 및 節次 자체가 정당한 무역에 대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섭은 가트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또 적절한 경우에는 새로운 규칙 및 규율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교섭은 가트내에서 이미 수행되어 온 작업을 고려하면서, 不正商品의 國際貿易을 규제하는 원칙, 규칙 및 규율에 관한 다자간의 기본원칙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이를 교섭은 이를 사항을 다루는 世界知的所有權機構 및 기타의 기관에서 행하여 지는 보완적인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않된다.」

이와같이 知的所有權問題가 가트에 까지 확산된 것은 직접적으로는 위조상품의 교역에서 비롯되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既存의 知的所有權의 國際的保護體制의 限界에 있다. 즉 기존체제는 시행에 있어서 집행력을 갖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각 국내법에서 보호의 水準을 정함으로써 각국의 경제·사회의 여건 및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각기 서로 다른 制度를 보유하여 知的所有權保護制度에 대한 國際的인 調和와 統一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당초의 계획은 協商을 2단계로 추진, 제1단계인 1987년 말까지는 各國의 提案과 現行制度를 검토하여 協商議題 및 計劃을 마련하여, 제2단계가 종료하는 1990년 말까지는 제1단계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지하다 싶이 주로 農業問題 때문에 協商이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知的所有權問題에 관한 한은 어느정도 결론에 도달하

4차(1956); 제4회 관세교섭, 3000품목:(25억 \$ 상당), 22개국 참가.

5차(1961-1962); 디-론라운드, 4400품목(49억 \$ 상당), 23개국 참가.

6차(1964-1967); 케네디라운드, 30000품목(400억 \$ 상당), 46개국 참가.

7차(1973-1979); 동경라운드, 27000품목(1550억 \$ 상당), 99개국과 EC참가.

8차(1986-); 우루과이라운드

*1차에서 5차까지는 리퀘스트 오퍼방식, 6, 7차는 하모나이제이션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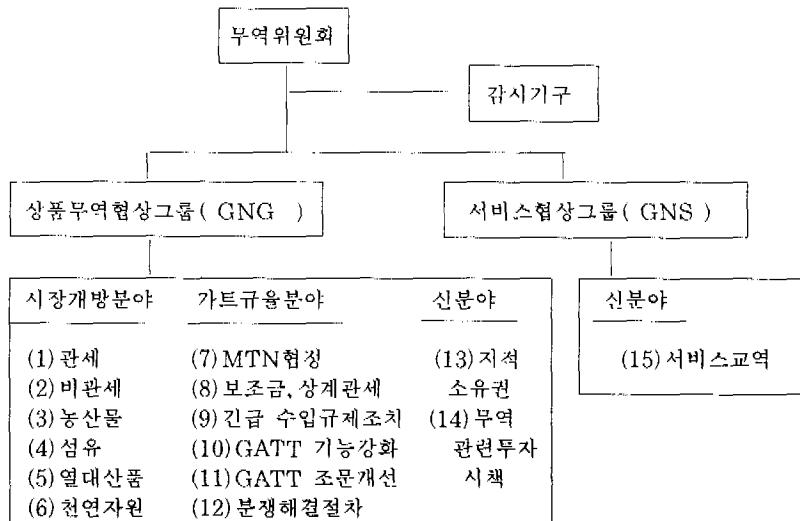
고 있으며, 이하 그사이의 주요 쟁점과 주요국의 입장, 그리고 예상되는 타결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6. 知的所有權의 貿易關聯 側面의 問題와 最終案의 内容

6.1 序言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교섭이 제1부(상품과 무역에 관한 교섭)와 제2부(서비스 무역에 관한 교섭)로 나뉘어져 있고, 知的所有權은 부정상품무역과 더불어 제1부 속에 포함되어 있다²³⁾. 그 정식 명칭은 「不正商品을 포함하는 知的所有權의 貿易關聯 側面에 관한 協商 그룹」(Negotiation Group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rade in Counterfeit Goods)이며, 줄여서 TRIPs協商그룹이라고 한다. “부정 상품을 포함하는 知的所有權의 貿易關聯 側面”이라는 긴 명칭 자체가 TRIPs의 라운드 등장 경위를 상징하고 있다. 즉, (1) 이미 본바와 같이 원래 본 교섭은 동경라운드 당시 미국이 부정상품코드의 체결을 주장하면서부터 가트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여 (2) 우루과이라운드의 발족과 더불어 부정상품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知的所有權 領域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3) 다만 라운드의 교섭대상으로서의 적격성이 문제가 되어, 무역관련 측면에만 한정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교섭과정에서 명확히 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이중 (3)에 대해서는 교섭 발족후에도 선진국은 知的所有權의 問題에 대해서 망라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개발도상국그룹은 기본적으로 不正商品(商標權侵害商品) 및 海賊商品(著作權侵害商品)의 규제 및園束을 중심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접근방법에 관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이 문제는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경제구조의 차이에서 유래하는 것이며, 그런 만큼 쉽게 타협점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1990. 12월의 議長報告書에는 두개의 접근방법이併記되어 있었다²⁴⁾. 그러나 현실의 協商過程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주장이 기초로 되어 있었고²⁵⁾, 협상도

23)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체계는 다음과 같다.



선진국주장 내용을 기초로 진행되었으며, 1991. 12월의 소위 둔켈 최종협정초안(Draft Final Act)은 후진국안은 폐기되고, 선진국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함과 아울러 당시까지 未妥結部分에 써워져 있던 팔호를 모두 삭제하였다. 즉 최종협정초안은 73개조의 단일안으로 되어있다. 同協商은 아직 타결된 것은 아니나 GATT사무국은 1991. 12. 20 最終協定草案을 발표하였으므로 이하 본보고서에서는 同草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同草案이 7장(一般原則, 保護規範, 執行, 權利取得, 紛爭處理, 經過措置, 組織 및 最終規定) 7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대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논의가 되고 있는 7개 분야의 協商內容(著作權(隣接權 포함), 商標, 地理的表示, 意匠, 特許, 半導體集積回路의 配置設計, 非公開情報의 7分野) 및 同草案 内容이 既存의 國際規範과 어디가 다른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6. 2 7개 分野에 대한 TRIPs案의 内容

GATT事務局에서는 1991. 12. 20. 最終協定草案을 發表하였는 바, 이 중 제3 附屬書인²⁶⁾ TRIPs 分野의 協定草案中 實體的인 内容을 概觀해보기로 한다.

(가) 著作權 및 著作隣接權 分野

協定案 9조-14조는 著作權 및 著作隣接權 분야에 대해서 규정한다.

먼저 모든 締約國이 베른 條約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原則을 宣言한 후(제9조 1항), 著作權 保護는 표현에는 미치나 아이디어나 절차, 운용방법이나 수적개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2항). 또 컴퓨터프로그램은 그것이 소스코드이든 오브젝트 코드이든 모두 베른협약에 따른 語文著作物로 보호하며(제10조 1항), 데이터베이스는 그것이 기계적 가독형태이거나 기타의 형태이거나를 불문하고 知的創作物로 保護한다(제10조 2항).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映像著作物의 경우 著作者 또는 權利承繼人에게 貸與權을 인정한다(제11조). 著作權의

24) 제7차 議長報告書는 의장이 자신의 책임하에 그사이의 協商結果를 整理한 것이며, TRIPs 협상의 전 행상태를 설명하고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쟁점을 명시하는데 주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협상당사국 간에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팔호안에 표시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표시되어 있었다.

또 우루파이라운드 TRIPs협상에 임하는 각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상이한 두 그룹으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중립적 입장에 있는 의장으로서는 단일안을 기초하여 제출하기가 매우 곤란한 입장이었으므로 그 협정초안은 두개의 별도안으로 성안되었다. 草案 A인 「위조상품교역을 포함한 무역관련 지적소유권 협정」은 주로 선진국의 입장을 존중하여 만들어 진 것으로 前文과 本文 제7장 75개조와 부속서로 이루어 졌으며, 草案 B인 「위조 또는 해적상품교역에 관한 협정」은 前文과 本文 16조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내용도 주로 선언적인 것에 그쳤다.

25) 이를 나타내는 단적인 예로 지적소유권문제가 UR협상 議題로 채택된 때부터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협상범위가 「위조상품교역문제→무역관련 지적소유권→지적소유권일반→신지적소유권분야의 포함」으로 그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는 兩 그룹이 가트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협상력 및 전문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TRIPs협상이 진행되면 될 수록 점차 선진국 그룹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동 협상이 진행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손찬현, 우루파이라운드 지적소유권 협상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0. 5, 42면). 또 그사이의 경과에 대해서는 鄭陳燮, 國際知的所有權法, 育法社, 1992, 126면 이하 참조.

26) MTO협정은 UR의 모든 결과를 부속서로 하고 있는데 ANNEX 1A는 전통적인 GATT관장사항과 MFN협정의 일부, ANNEX 1B는 서비스협정, ANNEX 1C는 TRIPs협정, ANNEX 2는 통합분쟁해결절차, ANNEX 3은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ANNEX 4는 민간항공기협정, 정부조달협정, 낙농협정, 우육협정을 포함하고 있다. MTO협정에 가입하면 ANNEX 1, 2, 3은 당연히 가입하는 효과를 가져오나 ANNEX 4는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保護는 사진저작물과 응용미술저작물을 제외하고는 50년 이상 보호하여야 하되 死亡時起算主義를 채택하지 아니할 경우는 발행년도의 다음해 부터 기산하여, 그리고 완성후 50년내에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완성년도의 다음해 부터 기산한다²⁷⁾.

실연자, 방송사업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저작인접권을 인정하고, 그러한 權利가 固定, 實演 또는 放送이 행해진 연도 말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함을 규정한다(제14조).

한편 同 協定案은 著作權의 制限에 대해서 규정한다(제13조)²⁸⁾.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도 로마협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정도까지 조건, 제한, 예외, 유보조항을 규정할 수 있다(제14조 6항).

(나) 商標 分野

協定案 15조-21조는 商標 分野에 대해서 규정한다.

保護對象으로서의 商標는 姓名을 포함한 單語, 文字, 數字, 圖形要素 및 色彩의 結合과 같은 標識 또는 그러한 標識들의 結合으로서 他商品 또는 서비스와의 識別力이 있는 標識이다. 회원국은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商標만을 등록요건으로 요구할 수 있다(15조 1항). 또 商標의 保護期間은 최소한 7年으로 하고 그 登錄更新은 無制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불사용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不使用期間이 3년 이상 계속 되어야 한다(15조 3항).

(다) 地理的表示 分野

協定案 22조-24조는 地理的表示, 특히 포도주 등 酒類에 관한 地理的表示의 保護方法과 그例外를 규정한다.

地理的表示란 상품의 명성, 품질과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 기초하는 경우, 회원국 또는 회원국의 한지역, 지방에서 생산된 표시임을 알리는 표시이다(22조 1항). 이러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이유는 地理的表示에 관한 不正競爭行爲를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地理的表示 자체가 商標로서의 식별력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地理的表示에 관하여 不正競爭防止法 제2조 3, 4호에서 보호한다.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TRIPs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약간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라) 意匠 分野

協定案 25조, 26조는 意匠에 관하여 규정한다. 즉 協定案은 新規性, 創作性이 있는 意匠을 최소한 10年間 保護하되²⁹⁾, 유행에 민감한 織物意匠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속히 심사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³⁰⁾.

27) 협정안은 베른조약을 존중한다고 규정하므로 死亡時起算主義의 경우에는 사망후 50년 이상 보호되며, 사진저작물이나 응용미술저작물은 25년 이상 보호된다. (베른조약 제7조).

28) [체약국은 배타적 권리의 제한 및 예외를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저작물의 상상적인 사용과 저촉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29) (제 25조 1항) 「회원국은 새롭거나 독창성이 있는 독립적으로 창작된 의장에 대해서 보호를 한다. 회원국은 의장이 공지된 의장 혹은 공지된 의장의 결합과 현저하게 다르지 않을 경우 그 의장을 새롭거나 독창성이 없는 의장이라고 할 수 있다. 회원국은 기본적으로 기술적 혹은 기능적 고려에 의해서 만들어진 디자인에는 그러한 보호가 미치지 않게 할 수 있다.」

(마) 特許 分野

協定案 27조-34조는 特許에 대해서 규정한다.

協定案은 新規性, 獨創性, 產業上 利用可能性이 있는 發明은 保護하되 公序良俗 등에 위반한 發明은 보호하지 않는다. 또 각국이 개별적으로 제외 할 수 있는 發明으로서 ① 診療·治療·外科手術 등 人間 또는 動物에 대한 醫療技術과 ② 微生物을 제외한 動物 및 植物(動植物의 生產을 위한 生物學的 過程도 포함)을 들고 있다. 다만, 植物變種에 대하여는 特許 또는 기타 效果의制度에 의해 保護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強制實施權에 대하여 그 要件, 補償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特許權의 保護期間은 出願日로 부터 취소한 20年 保護하여야 한다.

(바) 集積回路配置設計 分野

協定案 제35-38조는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해서 규정한다.

먼저 協定當事國은 “集積回路에 관한 知的所有權條約(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의 규정에 따른 保護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 그 保護對象은 回路配置設計(layout-design), 보호되는 배치설계가 결합된 集積回路(integrated circuits) 및 그 集積回路가 포함된 最終製品에도 미치도록 하고 있다. 논의과정에서 IC배치설계나 IC칩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異論이 없으나 IC칩이 내장된 전자제품 등의 최종제품(final product 혹은 down stream product)까지 보호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의 대립이 있었다. 우리나라로 처음에는 최종제품의 보호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했으나 「최종제품에서 불법복제된 IC칩을 제거하고 정상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 제품도 있고(이 경우 불법IC칩이 제거된 최종제품에는 배치설계권이 미치지 아니한다), 또 제37조에서 선의의 구입자를 보호한다」는 규정도 있으므로 이정도의 선에서 타협을 본것이다. 1992년 성립된 우리나라 半導體集積回路의 配置設計에 관한 法律도 最終製品까지 保護하나 선의의 구매자보호규정을 두고 있고 이점은 TRIPs안 역시 마찬가지이다(제 37조 1항).

半導體칩의 配置設計의 保護期間은 登錄出願日 또는 配置設計의 創作日로부터 10年으로 하고 있다.

(제 26조 3항) 「의장의 보호기간은 적어도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 30) 제25조 제2항(직물의장의 보호요건)은 「각 회원국은 직물의장의 보호요건 특히 비용 심사 혹은 공고상의 요건들이 직물의장이 보호를 받을 기회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한다. 회원국이 이 의무를 의장법 혹은 저작권법에 의해 이행할 것인지는 자유이다.」라고 규정한다. 본항은 유행에 민감한 직물의장(textile design)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이며, 신속한 심사와 등록을 통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는 스위스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① 직물의장에 대해서만 특별보호를 해야할 필요성이 부족하고, ② 관련 잡지 등에 게재되면 저작권으로 보호 가능하므로 구태어 이러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반론이 있었으므로 당초 스위스의 주장인 직물의장의 경우 무심사주의 혹은 신속한 심사를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완화하여 비용·심사 혹은 공고상의 요건이 직물의장의 보호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정도로 규정한 것이다. 우리 특히 청은 이와 관련하여 우선심사제도 활용 계획으로 알려졌으나 우리 저작권법상 직물디자인은 용용미술로서 보호가 가능하므로 본조가 규정한 의무이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중복보호에서 오는 문제점의 해소일 것이다.(자세한 것은 撫稿, 디자인보호서설, 제간 저작권 제20호, 5면 이하 참조).

(사) 非公開情報保護 分野

協定案 39조는 不正競爭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营業秘密 및 政府에 제출한 資料를 保護하도록 규정한다. 협상 초기에는 营業秘密은 知的所有權이 아니므로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개도국의 반발 때문에 논의조차 이루어 지지 않았으나 그후 선진국은 不正競爭行爲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营業秘密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에 일본 및 북구등이 찬성하므로써 非公開情報가 보호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비공개 정보에는 营業秘密(제39조 2항)³¹⁾과 정부에 제출된 임상실험자료(제39조 3항)³²⁾가 포함된다.

6.3 協定案의 內容과 既存의 國際規範과의 比較

TRIPs의 내용과 기존의 국제규범을 비교하여 보면 가장 큰 특징은 지적소유권보호규범의 강화라 할것이다. 그러나 TRIPs는 기존의 규법과는 달리 집행에 관한 문제나 분쟁처리에 대해서도 규정한다. 오히려 TRIPs가 既存의 國際規範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색은 이를 집행절차나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있을 것이고 이것이 미국이 기존의 국제규범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GATT體制를 利用한 理由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하 간단히 기존의 국제규범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가) 知的所有權 保護規範의 強化

知的所有權의 國際的保護에 관해서는 上述한 바와 같이 1883년 발효된 파리조약을 비롯 기존의 수많은 知的所有權條約이 있으며, 전문기관으로서 WIPO가 존재하나 TRIPs교섭의 제1의 특징은 이같은 既存 國際規範의 強化에 있다. 교섭에서는 기존 知的所有權條約의 위상이나 내용을 감안해서 세개의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즉 제1은 종래의 知的所有權保護條約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일정한 내용을 덧붙이는 방법, 제2는 기존의 國際規範을 참고하면서 새로운 國際規範을 만드는 방법, 제3은 기존의 國際規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白紙狀態에서 새로운 國際規範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하 차례로 살펴보자 한다.

1) 既存의 條約에 新しい 事項을 덧붙이는 방법

이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는 著作權에 관한 베른조약이나 產業財產權에 관한 파리조약과 같이 이미 國際社會의 대다수 국가가 체약국으로 되어 있어, 오랜 역사와 더불어 國際的 規律로서 그 지위가 확립되어 있는 분야이다. TRIPs 협정안에서는 著作權, 特許, 商標, 意匠의 4분야에 대해, 베른조약과 파리조약의 양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의 준수를 전제로 하여, 이에 덧붙여 추가적으로 保護規範을 제정하려고 한다(소위 베른 플러스(+), 파리 플러스(+))

31) 협정안은 营業秘密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1) 비밀일 것 (2) 經濟的 가치가 있을 것 (3) 秘密로서 管理되고 있을 것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32) 협정안 39조 3항은 「신규 의약품 또는 신규 화학물질을 이용한 농약품의 제조허가 요건으로 상당한 노력이 소요된 미공개 테스트 또는 데이터의 제출을 요구할 때 그와같은 데이터를 부정한 영업적 사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회원국은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그리고 부정한 영업적 사용으로부터 그 데이터의 보호가 보장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와같은 데이터가 공개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어프로치). 예컨대 著作權에서의 컴퓨터 프로그램 保護나 貸與權 認定, 特許에 있어서 保護期間의 設定이나 강제실시권의 발동요건 조건의 세분화, 特許對象範圍의 明確化(특히 動植物品种이나 醫藥品에 대한 特許附與 與否)가 이에 해당한다.

2) 既存의 條約을 참작하면서 새로운 國際規範을 만드는 방법

이미 知的所有權條約은 존재하지만 체약국의 수도 많지 않고, 내용적으로도 國際性을 갖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조약을 참고하면서 새로운 규범을 작성하려고 한다. 이에 해당하는 분야가 著作隣接權이나 地理的表示, IC 배치도 등이다.

실연거나 레코드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保護를 위한 로마조약, 소위 隣接權條約은 체약국도 적지않고, 내용적으로도 著作權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만큼 베른조약이나 파리조약과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현재 인접권에 관한 분야는 기존 조약을 참고하면서 새로운 규범을 작성하였다.

한편 포도주에 있어서 보르도 등 生產地名의 表示는 생산품의 명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미 마드리드 協定, 리스본 協定 등이 존재하나 새로운 國際規範을 작성하려고 하고 있다. 참가국 중에서도 고급포도주나 치즈의 생산지를 가지고 있는 EC는 TRIPs協商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포도주에 대해서는 다른 산품과 구별하여 실제 생산지 외의 제3자의 사용을一切 금지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IC 배치도에 대해서는 1989년의 위싱톤조약이 작성되어 있으나, 세계 반도체 생산의 8할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이 불충분한 保護水準에 불만을 품고 이에 참가하지 않고 있으며, 서명을 끝낸 EC도 비준을 보류하고 있어 아직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TRIPs 협상에서는 일본과 미국이 중심이 되어 위싱톤조약을 참조하면서 새로운 규범을 만들고 있다. 그것은 이미 본바와 같이 부정 배치설계 및 IC칩과 이것을 부품으로 사용하여 제작한 제품을 權利侵害物品으로 인정함과 아울러 선의의 취득자라 하더라도 칩해사실 인식후에는 보상하여야 한다는 補償義務規定 등, 보다 높은 保護規範을 마련하고 있다.

3) 既存의 知的所有權保護條約이 없으므로 새로이 國際規範을 만드는 경우

이 分野에 속하는 것은 미공개정보의 경우이다³³⁾. 미공개정보는 소위 영미의 트레이드 씨크레트(營業秘密)이라고 부르는 것과 政府提出未公開資料를 포함한다. 영업비밀이란 협정안에 의하면 ① 비밀정보이며, ② 영업상의 가치를 가지며, ③ 비밀유지의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기관에 제출된 정보]란 신규의약품 또는 화학물질을 이용한 농약품의 제조허가 요건으로 정부에 제출된, 상당한 노력이 소요된 미공개 테스트 또는 기타 데이터를 말한다.

나) 執行節次의 新設

TRIPs 協定案 part III은 知的所有權의 執行節次(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관한 규정이다. 執行이라는 말은 알기 어려운 용어이나 요컨대, 知的所

33) 다만 파리조약 제10조의 2 부정경쟁방지조항과는 관계가 깊다. 독일, 일본, 우리나라는 영업비밀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한다.

有權保護規範을 담보하기 위한 司法, 行政上의 節次에 관한 규율이며, 세관등 水際措置에 관한 절차도 포함되어 있다. 既存의 知的所有權條約은 오로지 保護規範을 정하는 데에 그치고 있고, 집행은 각국의 국내조치에 맡기고 있다. 그 결과 모처럼 높은 保護水準을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라에 따라서는 단속이 불충분하다든지 혹은 權利者가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별로 효과가 없어 속수무책으로 참을 수 밖에 없는 사태가 생긴다. 이러한 既存의 國際規範의 결합에 대해서 TRIPs협정안에서는 민사, 행정, 형사의 각 절차, 잠정조치, 국경 수제조치에 관한 21개조(제41조-제61조)에 달하는 상세한 규정을 두어 執行面에서의 통일적인 國際規律의 설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 紛爭處理節次의 明定

既存의 知的所有權條約은 조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해서 체약국간에 다툼이 생긴 경우에는 國際司法裁判所에 부탁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독자적인 분쟁처리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³⁴⁾.

반면 가트가 지금까지 높은 規範性을 維持하여 온 것은 독자적인 분쟁처리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기인하며, TRIPs교섭에서도 규범성이 강한 분쟁처리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남북간의 대립이 있었다. 당사국간의 협의, 제소, 패널조치까지는 대략 합의가 도출되어 있으나 1) 가트분쟁처리절차를 적용하자는 주장, 2) 가트절차와의 결부를 부정하면서 보복조치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주장, 3) 계쟁사항의 내용에 따라 WIPO에 부탁하거나 가트절차를 준용하자는 주장등 3개의 안이 주장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종안 제64조에서는 「GATT일반협정 22조, 23조의 규정과 체약국이 채택한 GATT일반협정 22조, 23조의 분쟁해결절차를 규율하는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는 본 협정에 특별히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하의 분쟁해결과 협의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6.4 知的所有權과 그 制限 및 獨占規制法

GATT는 知的所有權保護規範의 強化를 피하고 있으나 이와 아울러 그 남용이나 오용을 규제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즉 協定案 제8조 및 제40조는 先進國 그룹에 비교적 불리한 부분인 “原則”(8조)³⁵⁾과 “實施權契約에 있어서 反競爭的慣行의 規制”(40조)³⁶⁾條項을 두고 있다.

34) 다만 반도체집적회로의 회로배치설계를 보호하기 위한 위상분조약은 패널조치를 포함한 분쟁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보복조치조항은 없다. 또 이조약은 전술한 바와 같이 아직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35) 제 8조는 다음과 같다.

「1. 체약국은 본 협정상의 제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내에서 공중보건 및 사회경제, 기술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분야의 공공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자국의 법령과 규칙을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2. 본 협정상의 제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내에서 권리자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남용이나 비합리적으로 무역을 제한하거나 국제간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관행을 막기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36) 제40조는 다음과 같다.

「1. 회원국은 경쟁을 제한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몇가지 라이센싱 관행 또는 조건이 교역에 장애가 되고 기술의 이전 및 전파에 방해가 된다는 데에 동의한다.

이들 조항의 적절한 활용은 知的所有權의 濫用으로 부터 중진국 내지는 개발도상국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리라고 본다.³⁷⁾

7. TRIPs의 내용과 우리 現行法과의 比較

7.1 保護의 内容

TRIPs 協定案의 내용과 우리 현행법의 내용중 차이가 나는 부분만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보호대상	TRIPs	우리법	비 고
1. 著作權(인접권 포함) 9-14	데이터베이스 貸與權	규정 無	데이터베이스 貸與權 신설
2. 商標 15-21	色彩商標 인정	色彩商標 인정 여부에 대해 견해 대립	字句修正 요망
3. 지리적 표시 22-24	酒類에 관한 특별보호	규정 無	制度整備 요망
4. 意匠 25-26	織物意匠의 특별규정	규정 無	制度整備 요망
5. 特許 27-34	植物特許의 保護	無性繁殖 植物 특허 인정	有性繁殖植物 특허문제 검토
6. 半導體集積回路의 配置設計 35-38			우리나라 배치설계 법과 대략동일하므로 조정 불요
7. 非公開情報	政府提出臨床 資料 保護	규정 無	制度整備 요망

7.2 保護期間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TRIPs안과 우리법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2. 본조항의 어떤 규정도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회원국이 관련시장의 경쟁에 장애가 되는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구성하는 라이센싱 또는 조건을 국내법에 구체화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상기 규정에 따라 회원국은 각회원국의 관련법규에 비추어 배타적 grantback규정, 不爭規定, 강제적 일괄실시허락규정을 포함하는 관행을 금지 또는 통제하기 위해 본 협정상의 규정과 일치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7)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것은, 徐 慶濟, 우루파이라운드 지적재산권 협상타결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의 보완, 競爭法研究 제2호, 競爭法學會, 1990, 117면 이하 참조.

	TRIPs	우리나라	비 고
1. 著作權	사후 (혹은 발행후) 50년 이상	동일	조정 불필요
2. 著作隣接權	실연자의 권리나 음반제작자의 권리; 50년 이상 방송사업자; 20년 이상	20년	실연가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보호기간의 조정 필요
3. 商標	7년 이상	10년	조정 불필요
4. 意匠	10년 이상	8년	조정 필요
5. 特許	출원일로 부터 20년	출원공고일 부터 15년	조정 필요
6. 半導體集積回路의 配置設計	최초의 상업적 이용일로 부터 10년	동일	조정불필요

7.3 TRIPs 協商이 타결되는 경우 調整이 필요한 内容

가) 著作權 分野

① 데이타베이스

우리법은 편집저작물에 관한 규정이 있어 당분간은 이 규정이 보호규범으로서 역할을 하리라고 보여지나 데이타베이스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한 著作權法의補完이 필요하다고 본다.

② 貸與權

컴퓨터프로그램과 영상저작물 및 음반의 대여에 관한 규정은 현행 著作權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없기 때문에 TRIPs협정이 타결되면 이에 따른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 商標 分野 - 色彩商標

보호대상과 관련하여 우리법과 TRIPs협상 내용과의 차이는 色彩商標의 인정 여부이며, 우리나라도 협상과정에서 1990년도 상반기 까지는 色彩商標도입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⁸⁾. 그러나 이미 商標登錄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이나 WIPO 商標法統一化條約案도 色彩를 保護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先進國은 이에 찬성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1990년도 하반기 부터는 찬성 쪽으로 전회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色彩商標가 우리 현행법상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어 왔고³⁹⁾, 「色彩는 그 자체로는 商標로 될 수 없

38) 특히 청 국제협력담당관실 편, UR지적소유권 협상해설, 1993, 52면 참조.

39) 우리법상 色彩는 商標의 構成要素가 아니라는 견해는 丁允鎮, 455면; 李秀雄, 151면. 일본의 舊商標法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色彩를 限定하면 特別顯著性이 있게 된다든지 不登錄商標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의 것으로 인정되어 登錄適格性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救濟하기 위하여 色彩를 限定하여 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着色限定制度를 두었으나 現行法은 色彩를 商標의 構成要

지만 文字 圖形 記號 등에 着色이 되면 商標의 構成要素가 될 수 있다」는 견해⁴⁰⁾도 종전 부터 있어 왔으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자구 수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다) 地理的表示 分野 - 酒類에 관한 특별보호

협상안 제23조 제1항은 wine이나 spirits에 대한 특별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즉 동조 동항 후단은 주류의 原產地表示의 경우에는 「- kind, type, style, imitation 등의 표현을 병기한 경우」에는 그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예컨대 보르도(Bordeau) 풍 와인, 혹은 스카치(Scotch) 스타일(타입) 위스키라는 표현은 프랑스 보르도지방에서 생산된 와인 혹은 스코트랜드產 위스키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도록 한것이다⁴¹⁾. 협정안은 이 경우의 법집행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동조 註에서 행정지도를 통한 보호도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우리나라 不正競争防止法이 地理的表示를 보호한다고는 하나 이러한 엄격한 보호는 아니므로 이에 대한 制度的 整備가 필요하다고 본다.⁴²⁾

다) 意匠 分野 - 織物意匠

TRIPs안에는 유행에 민감한 織物意匠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意匠法에 이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優先審查制度」를 활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⁴³⁾ 그러나 우리 著作權法은 응용미술저작물을 보호하고 著作權의 發生에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으므로 「비용 심사 혹은 공고상의 요건」 때문에 織物意匠이 보호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대상을 意匠法과 著作權法에서 중복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정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⁴⁴⁾

한편 TRIPs안은 意匠의 최소 보호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意匠法의 개정은 불가피 하다.

라) 特許 分野

① 有性繁殖 植物保護

TRIPs안 제27조 제3항은 「特許 또는 개별법 또는 양자에 의하여 식물변종의 보호」를 규정

素로 규정하여(日 商標 2 ①) 위와 같은 경우는 당연히 登錄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우리 상표법과 마찬가지로 商標概念(美 商標 45)에 色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아니하나 해석상 商標에 着色되면 商標의 構成要素가 되고 원, 삼각형, 십자모양, 별 등에 채색되어 특별한 고안(particular design)으로 인정되면 商標로 登錄될 수 있다고 본다(Goldstein, Copyright, Patent, Trademark and Related State Doctrines, Callaghan & Company, 1973, 323면; M. J. Beran(吉井參也外共譯), アメリカ商標法の 實際, 至誠堂, 1975, 61면).

40) 宋永植 외, 知的所有權法, 育法社, 1992, 544면.

41) 다만 既存의 使用者나 善意使用者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계속사용을 허용한다(TRIPs안 제24조 제4항, 5항 참조). 또 삼폐안, 코냑 등과 같이 일반 명칭화한 지리적 표시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TRIPs안 제24조 제6항).

42) 前掲 特許廳 解說, 72면.

43) 前掲 特許廳 解說, 87면.

44) 問題點에 대한 자세한 것은, 拙稿, 前掲 디자인保護序說, 5면 이하 참조.

한다. 이러한 식물변종에는 유성번식에 의한 것과 무성번식에 의한 것이 있고 우리 特許法은 무성번식 식물(감자, 고구마 등)은 特許를 부여하지만 유성번식 식물에 대해서는 特許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유성번식 식물을 特許로 보호할 것인지 혹은 특별법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입법조치 있어야 할것이다.

② 保護期間의 調整

TRIPs안 제33조는 「보호기간은 출원일로 부터 2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종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우리법은 출원공고일로 부터 15년 보호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출원일 부터 기산하면 대략 20년 정도가 되나 반드시 20년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고, 또 우리법상 출원에서 출원공개 까지, 그리고 출원공개에서 출원공고까지의 보호수준도 각각 다르므로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마) 非公開情報 分野

非公開情報中 營業秘密의 保護에 관해서는 不正競争防止法에 규정이 있고 그 내용도 TRIPs協定案 내용과 유사하므로 조정이 필요없다고 보여지나 정부제출임상자료에 대해서는 우리법의 어디에도 보호규정이 없다. 따라서 TRIPs협상이 타결되면 이에 대한 制度的 整備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바) 소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TRIPs협상이 타결되면 우리나라에서도 知的所有權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부분의 재정비가 요청된다. 그러나 1986년 이후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知的所有權保護를 강화하여 왔고 현재 그 보호수준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거의 선진국에 유팔하고 있다. 따라서 TRIPs협상이 타결되더라도 知的所有權 分野에 대한 규범적 충격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본다. 다만 TRIPs의 타결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은 상당하리라고 보여지나 그사이의 적응력 훈련을 통하여 상당한 준비가 갖추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TRIPs가 知的所有權보호의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는 하고 있더라도 知的所有權制度의 남용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본다.

8. 結 語

지난 86년 우루파이의 푼타 멜 에스테에서 시작되어 우루과이라운드라고 불리고 있는 관세부역 일반협정(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은 올해로 7년째 접어들고 있으며 아직도 공산품, 서비스, 농산물 문제는 미해결로 되어 있다. 특히 농산물 문제를 둘러싼 美-佛의 힘겨루기로 타결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日本經濟新聞은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공중분해될 확률 50%, 연말까지 부분적인 합의로 우선 타결될 확률 40%, 年內(1993년)에 완전 타결될 확률을 10%로 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UR이 타결되든 공중분해되든 이와 무관하게 知的所有權의 保護強化 傾向은 앞으로

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社會가 產業社會에서 知價社會로, 物質優位에서 情報優位로 변화하게 되면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制度는 강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TRIPs협상은 이러한 경향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아직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한 우리로서는 知的所有權保護의 強化 경향에 대해서는 방어적 수동적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TRIPs의 보호수준이 높아 개발도상국의 기술적 예속을 영구화할 것이라는 비판이나 GATT 체제하의 지적소유권보호는 조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체약국에 대한 무역보복조치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기준을 강요할 것이므로 종래의 내국민대우에 기초한 보호체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에 傾倒되기 쉽다. 이는 경청할 만한 견해이며, 어느정도 수긍이 가지 않는 바는 아니나 오늘날 사회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수동적 태도만으로 일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경제체제가 선진국과의 연계없이는 유지하기 힘들게 되어 있고 또 地球村이라는 용어에 함축되어 있는 바와 같이相互協助와 依存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 각국에 공통된 경향이다. 따라서 規範의 統一化 내지는 調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사회가 工業社會에서 知價社會로 변화하면 종래보다 보다 많은 종류의 정보에 대해서 보호를 피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보호수준도 강화되지 않을 수 없다. 사태가 그러하다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知的所有權의 보호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우리 자체의 기술개발에 대한 자극과 더불어 외국 첨단기술의 이전에도 유리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않된다. 특히 부존자원은 부족하나 비교적 풍부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경향을 반길지언정 이에 逆行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적어도 우리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 서기 위해서는 그렇다.

知的所有權 分野에 관한 한 UR의 타결을 기정사실로 받아 들여 이에 대한 法制度의 整備를 서둘려야 할 것이며, 우리의 자세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최근의 입법경향을 보면 기업체에서 종업원이 업무상 창작한 지적창작물에 대해서는 그 저작자 내지는 권리자를 곧바로 당해 기업체(단체)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입법태도가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나 이러한 입법태도가 개발을 한 당해 종업원의 이득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창작의욕을 저하시키거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시키는데 장애요소가 되리라고 본다. 창작한 종업원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도록 하는 세심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 知的所有權制度는 기본적으로 독점을 통해 지적창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이를 통해 창작을 장려하는 제도이나 이와 아울러 창작자의 명예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별도의 보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상승적 효과를 거두어야 하리라고 본다.

끝으로 한마디 언급할 것은 知的所有權制度를 능숙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이다.

길지 않은 기간이었으나 우리나라와 제 외국, 특히 미국이나 EEC와의 그사이의 知的所有權協商過程이나 紛爭解决過程을 뒤돌아 보면 知的所有權 自體에 대한 無知 때문에 받은 피해도 결코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知的所有權制度를 능숙하게 운용할 수 있는 知的所有權 관련 분야의 專門家의 養成도 緊急한 課題라고 할것이다.

(후기)

사회과학논집에 本稿를 게재한다는 통보를 받은 1993년 12월 15일은 7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지루하게 끌어 온 우루파이라운드가 타결된 날이다. 타결의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신문에 난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지적소유권에 관한 한 최종 타결내용은 소위 둔켈

案과 거의 같아 본문의 내용 중에는 수정해야 할 곳이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물론 서론이나 결론 부분은 타결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그부분의 미래형이나 가정형은 이제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타결 2,3개월 전에도 그 타결여부는 불분명하였고, 그 사실을 그대로 기록으로 남겨 놓는 것도 전혀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타결전에 작성된 원고이지만 그렇다는 사실만을 밝히고, 수정없이 발표하기로 한다.

끝으로 1993년 定期國會에서 TRIPs 내용과 부합하는 지적소유권법의 개정이 일부 있었다는 사실을 附記한다.

〈參考文獻〉

國內文獻

鄭 鎮勝/韓 培宣, 知的所有權保護의 現況과 우루과이라운드協商의 對應姿勢, 韓國開發研究院, 1988.

經濟企劃院 정책1담당관실, UR/知的所有權協商推進對策, 1989. 1.

經濟企劃院 대외경제조정실, UR/知的所有權協商推進對策, 1989. 6.

產業研究院, 美·日 知的所有權紛爭과 日本의 對應戰略, 1989. 10.

著作權審議調停委員會, 國際 著作權秩序의 變化와 우리의 對應方案, 1990. 6.

_____, 우루과이라운드 協商以後의 著作權界, 1990. 12.

_____, 變化하는 著作權環境의 진단과 전망, 1993. 6.

特許廳, UR/지적재산권 제7차보고서(안)-UR/知的所有權協商資料, 1990. 12.

特許廳 國際協力擔當官室, 위조상품거래를 포함한 TRIPs協商, 연월일 未詳.

特許廳 國際協力擔當官室, UR 知的財產權(TRIPs) 協商 解說, 1993. 3.

徐憲濟,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재산권 협상타결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의 보완, 競爭法研究 제2호, 競爭法學會, 1990.

鄭 浩, 知的所有權制度의 國際的 課題, 知的財產(52호), 1991. 3.

韓國實業者團體聯合會/韓國音盤協會, UR와 著作隣接權 保護, 1991. 7.

許熒成, 우루과이라운드 協商과 著作權, 國民대학교 대학원, 1993.

崔公雄, 國際私法, 育法社, 1984.

三宅正太郎/김인경역, 무역마찰과 GATT, 고려원, 1986.

孫讚鉉, UR/知的所有權 協商課題와 우리의 對應方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0. 1.

_____, 우루과이라운드 知的所有權 協商課題와 우리의 對應方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0. 5.

對外經濟政策研究院, 우루과이라운드-課題別 協商의 進展狀況과 展望, 1990. 10.

_____, UR 總點檢, 分野別 評價와 우리의 對應, 1992. 8.

國際經濟問題研究會,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경제, 녹진, 1991.

盧德律, GATT 이야기(EM문고), 韓國經濟新聞社, 1991.

宋 永植/이 상정/黃宗煥, 知的所有權法, 育法社, 1992.

鄭 陳燮, 國際知的所有權法, 育法社, 1992.

國外文獻

〈日本〉

- 紋谷暢男/濵谷達紀/満田重昭, 新技術開発と法, 三省堂, 1993.
- 西館和之, GATTにおける知的所有権保護の現状及びその動向について, パテント(vol. 41 no. 4), 1988. 4.
- 榎泰邦, ウルグアイ ラウンドと新分野(上/下), ジュリスト No. 975, 976, 1991. 3. 15 / 4. 1.
- 小島康裕, 企業社會と自由, ジュリスト No. 978, 1991. 5. 1-15.
- 松下満雄, 國際貿易と知的所有権, 特許研究 No. 4, 1987. 7.
- _____, 國際通商法の動向, ジュリスト No. 1000, 1992. 5. 1-15.
- 櫻井雅夫, 産業と企業のグローバル化, ジュリスト No. 1000, 1992. 5. 1-15.
- 小泉直樹, 特許制度の國際化, ジュリスト No. 1000, 1992. 5. 1-15.
- 中山信弘, 工業所有権と通商問題, ジュリスト No. 1000, 1992. 5. 1-15.
- 齊藤博, 著作権法制の行くえ, ジュリスト No. 1000, 1992. 5. 1-15.
- 本間忠良, 米新通商法と知的所有権-關稅法337條をめぐる諸問題, ジュリスト 1988. 11. 1.
- 五月女正三, 知的所有権にまつわる世界の動き, 發明 85卷 2호.
- 江口雄次郎, ガットの強化と知的所有権保護の調整, 特許管理 36卷 11호.
- 遠矢浩規, 知的所有権に關する日米歐民間三極會議について, 發明, 1988. 8.
- _____, 知的所有権の國際的動向, 發明, 1991. 1.
- 機械振興協會 經濟研究所, 知的所有権と新貿易秩序, 1990. 5.
- 通商產業省, 日本における知的所有権保護政策の現状と今後の課題, 1990. 2.
- 經濟企劃廳總合計劃局編, 知的所有権, 大藏省印刷局, 1987.
- 中山信弘/村上政博/内田盛也, 知的所有権, 日刊工業新聞社, 1987.
- 國際知的所有権研究グループ編, 國際化時代の知的所有権, 日刊工業新聞社, 1988.
- 叶芳和/高石義一編, 先端産業の知的所有権, 東洋經濟新聞社, 1990.
- 日本工業所有権法學會, GATTと知的所有権-工業所有権法學會年報 第15號, 有斐閣, 1991.
- 木谷雅人, 著作権保護の國際的動向について, コピライト(Vol. 32 No. 2), 1992. 5.
- 山中伸一, ガット・ウルグアイラウンドTRIP交渉と著作権, コピライト (Vol. 32 No. 4) 1992. 7.
- 木棚照一, 國際工業所有権法の研究, 日本評論社, 1989.
- _____, 國際取引の側面からみた知的所有権の國際的保護, 特許研究 No. 6, 1988. 9.

〈歐美〉

-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an Ag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6.
- K. R. SIMMONDS, THE COMMUNITY AND THE URUGUAY ROUND, *Common Market Law Review*(Vol. 25 No. 2), 1988 Summer.
- GATT SECRETARIAT, DRAFT AGREEMENT ON THE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990. 5.
- Ulrich Uchtenhagen, The GATT Negotiations Concerning Copyright and

-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IC*, 1990. 6.
- Paul Edward Geller, Can the GATT Incorporate Berne Whole?, *EIPR*, 1990. 11.
- JOHN SLAUGHTER, TRIPs : The GATT Intellectual Property Negotiations Approach their Conclusion, *EIPR*, 1990. 11.
- Joerg Reinbothe/Anthony Howard, The State of Play in the Negotiations on TRIPs (GATT/URUGUAY ROUND), *EIPR*, 1991. 5.
- M. M. Kostecki, Sharing Intellectual Property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EIPR*, 1991. 8.
- Phillip C Mendes da Costa, Patent Harmonization through GATT : TRIP or trap ?, *Patent World*, 1992. 10.
- Thomas Cottier, Perspective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ENT.LR* Vol. 2 issue 5, 1991.
- OLIVER LONG, Law and its Limitations in the GATT Multilateral Trade System,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5.
- Rajan DHANJEE/Laurence BOISSON DE CHAZOURNES,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Journal of World Trade* Vol 24 No.5, 1990. 10.
- Robert E. Hudec, The GATT Legal System and World Trade Diplomacy, Butterworth Legal Publishers, 1989.
- Michael Gadbaw/Timothy J. Richard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Grobal Consensus, Grobal Conflict ?, Westview Press, 1988.
- Friedrich-Karl Beier/Gerhard Schricker(ed.), GATT or WIPO?- New Ways i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VCH, 1989.